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호	97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 나. 식생활 및 영양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0.1.1. ~ 2022.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 서울시 식생활 및 영양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 운영
 -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
 -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0억원 (2020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2 제1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필요성

- 고령화, 1인 가구 및 만성 질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나아가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와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식품정책과 식생활개선팀 이인선 (☎2133-4739)